



IATF – 국제 자동차 산업 전담 팀

IATF 승인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규칙 5판 – **공인 해석**

IATF 16949를 위한 IATF 승인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규칙 5판은(“규칙 5판”) 2016년 11월에 출판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다음과 같은 공인 해석이 IATF에 의해 결정되고 승인되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인 해석은 출판 시 적용된다.

개정된 본문은 **청색**으로 보여진다.

공인 해석은 규칙 또는 요구사항의 해석을 변경하여 자체적으로 부적합의 기준이 된다.

SI 1 2017년 6월 발행, 2017년 7월 1일 발효.

SI 2-5 2017년 10월 발행, 2017년 10월 1일 발효.

SI 6-7 2018년 11월 발행, 2018년 11월 12일 발효.

SI 8 2019년 10월 발행, 2019년 11월 1일 발효.

SI 1 2019년 10월 개정 및 재발행, 2020년 1월 발효.

SI 9-10 2020년 5월 발행, 2020년 6월 1일 발효.

SI 2 2020년 8월 개정 및 재발행, 2021년 1월 1일 발효

SI 11-21 2020년 8월 발행, 2021년 1월 1일 발효.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 style="text-align: center;">1 개정됨</p>	<p style="text-align: center;">IATF 16949 심사원에 대한 신청 프로세스 및 기준 4.2</p>	<p>인증기관은 IATF 심사원 자격부여 프로세스 입문을 위해 신규 심사원 지원자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후원 보증한 인증기관의 계약된 사무소는 각 지원자를 위해 완성된 신청서 양식과 IATF 심사원 자격 부여 프로세스에 대한 승인 및 접근을 위하여 관련 IATF 감독 사무소에 관련 지원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심사원 지원자는 다음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SO/IEC 17021 및 ISO 9001 심사를 수행하는 관련 인정기관 규칙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b) 제조 산업에서 심사 팀장으로 최소 3회와 더불어 ISO 9001 3자 심사를 최소 6회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자동차 부문 제조의 1자 또는 2자 시스템 심사 경력은 고려될 수 있다. c) 자동차 부문의 core tools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d) IATF 16949 적용성을 충족하는 조직에서 과거 40년 내에 15년 내에 자동차 산업 제조 조직에서 4년 상근의 적절한 실무 경력(품질보증 및/또는 품질경영 활동에 종사한 2년을 포함)을 가져야 한다 (4.0항 참조).¹ 비고: 화학, 전기, 금속 상품 분야(예, 항공우주, 전기통신, 철도(Rail), 산업용 오프로드 장비 등)에 있어 유사한 적용 범위를 가진 산업에서의 경력이 고려될 수 있다.¹ e) 신규 심사원 교육훈련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최소 2 일의 IATF 16949 3자 심사(특별 심사 제외)를 1 회 이상 관찰하여야 한다.²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¹IATF 16949:2016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동차산업 심사원 역량 허용. (2017년 6월 발행됨)</p> <p>²신규 심사원 교육훈련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IATF 제도에 대한 심사원의 지식 및 경험 향상시킴. (2019년 10월 수정됨)</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 style="text-align: center;">2 개정됨</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심사 7.2</p>	<p>다음은 인증기관이 인증된 조직(client)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필요가 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8.1 항 a) 및 8.1 항 b) 참조); - 조직(client)의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에 대응하여 (3.2 항 참조); - 조직(client)의 현장에서의 중대한 변경사항; - 인증서 정지의 결과로써 (8.3 항 참조); - 중 부적합에 대해 확인된 시정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검증하기 위해 (5.11.4 항 참조); - 마결상태아 수용되었(accepted)² 지만 100% 해결된 것으로 고려된 부적합에 대해 확인된 시정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검증하기 위해 (5.11.3 항 c 참조); - 실행된 시정 조치가 고객 성과 지표(들)의 달성에서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¹ - 인증서 철회(withdrawn)의 결과로써 (8.7항 참조). <p>특별 심사는 중지되지 않아야 한다.</p> <p>인증 기관은 식별된 부적합 사항(5.9항 참조)이 포함된 각 특별 심사에 대한 서면 보고서(5.10항 및 5.11.4항 참조)를 발행하여야 한다.²</p> <p>특별심사 및 특별심사에 대한 사유는 심사 종료회의로부터 20일(calendar days) 이내에 IATF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야 한다. 원격 지원 기능의 특별심사는 IATF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지 않아야 한다.</p> <p>인증기관은 이러한 특별심사가 수행될 것이라는 상황을 사전에 조직(client)이 알도록 해야 한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i>¹IATF는 인증기관이 고객의 성과 지표 (예: 납기 및/또는 품질)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IATF OEM 특별 상태 조건으로 인해 고객에게 중 부적합사항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보아 왔다. 인증기관은 조직(client)의 IATF 16949 인증서를 일시 중지하고 현장의 특별심사를 수행한다. 현장의 특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관은 파악된 시정 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i></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검증할 수는 있지만, 고객 성과 지표의 달성/개선으로 이어진 조치를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는 않았다. 이 새로운 요구사항은 고객 보고서/점수카드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특별심사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직(client)의 현장을 재방문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인증기관에 부여한다. (2017년 10월 발행)</p> <p>²100% 해결된 용어를 CARA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시킨다.</p> <p>각 특별 심사에는 심사 보고서가 조직(client)에게 발행되어야 하며 특별 보고서는 IATF CARA(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p> <p>원래 SI에서 누락된 7.2 항의 마지막 세 단락을 포함했다. (2020년 8월 발행)</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3	최초 자격부여 프로세스 4.3.1	<p>IATF 심사원 자격부여 프로세스로 접근이 승인되면, 신규 심사원 지원자는 IATF의 의무 공개교육(face-to-face)의 최초 자격부여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완료를 통하여 기술적 적격성을 실증하여야 한다. 최초 자격부여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심사원에게 IATF 인증기관 심사원 신분증(ID카드)이 발급되며 후원 보증하는 인증기관에게는 심사원이 후원 보증한 인증기관을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인증서가 발행될 것이다.</p> <p>인증기관은 해당 심사원이 최초 자격부여의 60일 이내에 온라인 IATF 심사원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심사원 인증서 발급은 심사원 카드와 중복되는 자격인정을 입증한다. 심사원 후보자는 이제 최초 자격부여 후 60일 내에 들어오는 것 대신에 최초 공개교육 자격부여 전에 IATF ADP를 입력해야 한다.</p>
4	재 자격부여 프로세스 4.3.2	<p>인증기관은 해당 심사원이 최초 자격부여의 2년 이내에 온라인 IATF 심사원 개발 프로세스에서 그들의 최초 지식 및 적용 평가를 완료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재 자격부여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완료 후, 심사원은 신규 IATF 인증기관 심사원 신분증(ID카드)을 발급받고, 후원 보증하는 인증기관에게는 심사원이 인증기관을 위한 심사 수행을 지속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인증서가 발행될 것이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심사원 인증서 발급은 심사원 카드와 중복되는 자격 인정을 입증한다.</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5	지원 활동 5.5	<p>인증기관은 제조 현장의 심사 아래에 있는 코멘트 필드에 각 심사 지원 기능 (즉, 심사된 장소 이름, 심사 일자, 심사원 성명 및 각 심사원의 심사일 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원격 지원 기능이 둘 이상의 제조 현장을 지원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단일 제조 현장 아래에 심사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정보는 지정된 형식, 영어야 한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i>인증기관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관찰된 현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격 지원 장소의 심사를 IATF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기 위해</i></p>
6	심사원 인증 유지 4.5	<p>각 인증기관은 후원 보증 받는 각각의 심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승인 및 거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 프로세스는 다음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a) 평가 결과 및 개발 진행상황을 포함하는 IATF 심사원 개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관리;</p> <p>b) 다음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의 측정과 지속적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심사 보고서 제출의 시의적절성 (5.10항 참조); - 조직(client) 부적합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최종 심사 보고서 제출의 시의적절성 (5.11.3항 참조); - 인증 결정의 결과 (5.12항 참조); - IATF 입회 심사의 결과; - 개별 부적합 분석; - 인증 기관 내부 입회 심사의 결과;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후 설문조사의 결과; - 조직 및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 <p>c) 최소 심사횟수 및 최소 심사일수 요구사항에 대한 완료 (4.5.1항 참조);</p> <p>d) 최소 CPD(지속적인 인원 개발) 시간의 완료 및 승인 (4.5.2항 참조);</p> <p>e) 모든 후원 보증 받는 심사원들에 대한 (상기 a) – d)) 기록들은 계약된 사무소에서 유지되어야 한다.</p> <p>수용가능한 수준의 성과가 달성되거나 유지되지 않으면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실행해야 하는지를 정의해야 한다.</p> <p>인증기관은 스폰서 받은 심사원과 관련하여 부정 행위가 발견된 경우 감독 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p> <p>IATF는 성과 때문에 IATF 16949 심사원의 자격부여를 경고하거나, 정지하거나, 영구히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IATF 16949 심사원의 활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정지 중에 IATF 16949 심사원은 IATF 16949 심사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IATF 16949 심사원의 자격부여가 철회되면 관련 감독 사무소와 인증 기관 모두가 해당 심사원을 비활성화 하여야 한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i>기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증 기관은 그들의 심사원의 성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IATF 16949 심사원에게 수용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정의하도록 프로세스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IATF가 모든 IATF 16949자격 인정된 심사원에 대해 해당심사원의 성과에 근간하여 또는 부정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i></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7	IATF 16949 인증자격 1.0	<p>“고객-지정 생산 부품” 은 차량의 필수적인 부분인 부품들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포함되는 고객-지정 부품들은 다음 부품들 만이다: 소화기, 카잭(car jack), 및 바닥 매트(floor mats), 사용자 매뉴얼(owner’s manual), 및 경고용 삼각 표지판(warning triangles) 및 반사 조끼(안전 조끼).</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경고용 삼각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 규정/표준에는 차량에 반사 조끼(안전 조끼)를 요구한다.</p>
8	심사팀 구성 5.6	<p>인증기관은 3년 심사주기의 각각의 사후관리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2단계 심사 팀에서 적어도 한 명의 심사원을 지명하여야 한다.</p> <p>비고: 만약 다른 심사 팀원이 사후관리 심사에 배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심사원 순환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관련 감독사무소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사직, 또는 인증기관 후원의 상실; - ADP 및 IATF 데이터베이스에서 심사원의 불활성화; - 조직(client)과의 이해관계 상충; - 개인 문제 (의료적 상황, 죽음 등과 같은); - 불가항력.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인증기관 심사원과 조직(client)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심사원 교체가 요구되는 경우, 감독사무소는 면제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통지받기를 원한다.</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9	서문	<p>이 문서는 국제 자동차 산업 전담팀(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IATF))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기존 멤버는 8개의 OEM: BMW 그룹, FCA US LLC, 다임러AG, FCA Italy Spa, 포드 모터사(Ford Motor Company), 지엠모터사(General Motors), PSA 그룹, 르노 그룹 및 폭스바겐(Volkswagen AG), 그리고 5개국 협회: ANFIA, AIAG, FIEV, SMMT와 VDA로 구성되어 있다.</p> <p>2019년 10월 IATF는 재규어랜드로버(JLR) 유한회사를 IATF의 새로운 OEM 멤버로 맞이했다.</p> <p>서문의 모든 단락은 이 SI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i>IATF OEM 회사 이름을 최신 이름으로 조정하였고, JLR 을 새 멤버로 추가하였으며, IATF 웹 사이트 멤버 목록에 따라 FCA 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였다.</i></p>
10	현장심사 활동 수행 5.8	<p>각각의 현장심사 (2단계, 사후관리, 갱신 및 전환 심사)는 최소한 다음에 관한 심사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p> <p>a)...j)</p> <p>k) 심사되는 고객 지정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고객 지정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와 증거. 고객 지정 요구사항은 3년 심사주기에 걸쳐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샘플이 취해져야 하고 심사되는 요구사항의 구체적 기록은 보유되어야 한다. IATF OEM 멤버(BMW 그룹, FCA US LLC, 다임러 AG, FCA Italy Spa, 포드모터사, GM, 재규어 랜드로버(JLR) 유한회사, PSA 그룹, 르노 그룹, 및 폭스바겐 AG)에 의해 발행된 고객지정 요구사항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p> <p>비고: 이러한 IATF OEM 고객지정사항은 IATF OEM 지정사항, 계약용어, 서비스 수준 합의사항, SQA 절차서 등으로 발행될 수 있다</p> <p>l)...r)</p> <p>섹션 5.8의 다른 모든 단락은 이 SI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p> <p>IATF OEM 회사 이름을 최신 이름으로 조정하였다. 이 규칙 요구 사항에 JLR 을 포함하였다.</p>
<p>11</p>	<p>심사보고서 작성 5.10</p>	<p>심사 팀은 초안 및/또는 최종 심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IATF CARA (Common Audit Report Application)보고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p> <p>심사 팀은 심사 동안 수집된 모든 정보와 심사 증거를 분석하고 심사 결론에 동의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각 현장 또는 원격 지원 장소에 관한 종료 회의 시 조직(client)에게 서면으로 된 심사 보고서(초안 또는 최종)를 발행해야 한다. 심사 보고서 초안에는 모든 부적합 사항의 기술, 개선을 위한 기회 (5.9항 참조) 그리고 인증기관 의사결정 기능에 관한 심사 팀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 부적합이 발행된 상황에서, 심사 팀은 해당하는 경우, 요구되는 다음 단계와 인증서 취소 프로세스 시점을 조직(client)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인증기관은 IATF CARA 부적합(NC) 관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와 함께, 각 심사의 15일(calendar days) 이내에 최종 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최종 심사보고서는 조직(client)의 경영대리인에 의해 접수 확인되어야 한다 (예: 수기 서명, 날짜가 기입된 이메일 등으로).</p> <p>최종 심사보고서는 ISO 17021에서 제공되는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적용범위, 제품, 그리고 심사주기 동안 요구사항이 심사되는 모든 자동차 부문 고객의 목록; b)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근무자의 평균 수 및 임시직 종업원을 포함하여 현장의 총 종업원 수. 확장된 제조 현장 인증 구조를 갖는 단일 현장에 대해서, 각 현장에서의 총 종업원 수는 현장별로 파악되어야 한다; c) 모든 자동차 부문 고객의 목록 및, 해당되는 경우 고객 지정 요구사항의 최신 일자;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d) 조직(client)의 제조 현장의 IATF OEM 공급자 코드 목록;</p> <p>e) IATF OEM 고객에 대한 조직(client)의 성과의 요약(즉, 제품 품질, 인도 및 특별 상황)과 성과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실행되는 조치사항에 관해 작성된 정보;</p> <p>f) 심사되었던 다른 현장(들) 그리고/또는 원격 장소(들)에서 지원/지원된 프로세스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서면 기술을 포함하여, 심사되는 프로세스 (부속서 1.1 의 표 참조) 및 심사된 각 프로세스의 성과에 관해 작성된 정보 (즉, 정해진 목표, 세부목표 및 현재 성과)의 요약;</p> <p>g) 심사된 제조 프로세스의 요약 (부속서 1.2 의 표 참조);</p> <p>h) 심사 프로세스 동안 입증된 부적합사항 및 개선의 기회;</p> <p>i) 관련된 경우, 이용되는 모든 기술 전문가 또는 통역사 및 심사 팀 명;</p> <p>j) IATF 16949 의 관련 조항 및 조직(client)의 품질경영시스템 간 부적합사항에 대한 상호 연관표;</p> <p>k) 원격 지원 장소가 이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 보고서는 그 장소의 주소, 기능, 지원하는 현장의 목록 및 심사되었던 상호작용에 대한 서면으로 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p> <p>l) 해당되는 경우, 충족되고 있는 규칙 5.2h 의 조건들의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에 관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요약;</p> <p>m) 인증기관 의사결정 기능에 대한 심사 팀의 권고;</p> <p>n) 최종 심사 계획서의 사본 (5.7.2 항 참조); 그리고</p> <p>o) 확장된 제조 현장 인증구조를 갖는 단일 현장에 대해보고서는 주요 제조 현장 및 모든 현장을 포함하는 인증의 완전한 범위의 식별을 포함하여 모든 현장의 전체 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확장된 현장 인증 구조를 갖는 단일 현장과 현재 조건의 타당성확인에 대한 정당성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5.8 r항 참조).</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원격 지원 장소를 위한 최종 심사 보고서는 지원하는 현장의 목록 및 심사되었던 상호작용에 대한 서면 기술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IATF CARA (Common Audit Report Application 출시와 함께 모든 보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관리되므로 보고서의 세부 정보가 삭제되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t; font-weight: bold;">12</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심사 발견사항 5.9</p>	<p>심사 팀은 인증 결정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 기준에 대한 적합, 그리고 발견되는 경우, 부적합 모두를 기록하여야 한다 (5.12항 참조).</p> <p>심사 팀은 CARA (Common Audit Report Application) 도구 내의 IATF 부적합(NC) 관리 양식을 사용하여, 모든 부적합 및 그 부적합을 지원하는 심사 증거를 조직(client)에게 파악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항이 파악되면, 심사 팀은 각 부적합을 10.0항의 정의에 따라 중 부적합 또는 경 부적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파악된 부적합은 개선에 대한 기회로 보고되지 않아야 하며 심사 동안 종결되지 않아야 한다.</p> <p>부적합은 세 네 부분으로 구분되도록 문서화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적합 사항의 기술; 2. 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지정 참고사항; 3. 부적합 사항의 기술을 지원하고 부적합 사항 분류를 정당화하는 객관적 증거; 4. 부적합 사항 분류를 정당화한다. <p>비고: 하나의 부적합은 동일한 IATF 16949 조항 내에서 한 개 이상의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p>심사팀은 파악된 부적합 사항을 다루는 특정 해결책을 조직(client)에게 권고하여서는 안 된다. 적합한 경우, 심사 팀이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거나 모든 개선의 기회는 파악될 수 있다를 파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증기관의 재량이다(10.0항 참조).</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IATF CARA (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도구 출시에 맞춰 업데이트</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되었다. CARA는 각 부적합에 대해 하나 이상의 IATF 조항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되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t; font-weight: bold;">13</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적합 관리 5.11, 중 부적합에 대한 조직(client)의 책임 5.11.1, 그리고 경 부적합에 대한 조직(client)의 책임 5.11.2 </p>	<p>5.11 부적합 관리</p> <p>조직(client) 및 인증기관은 아래 세부사항과 같이 부적합의 효과적인 종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IATF CARA 부적합 (NC) 관리 양식 및 어플리케이션 도구는 각 부적합에 대해 인증기관 심사 팀과 고객 간에 답변(response)을 교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p> <p>5.11.1 중 부적합에 대한 조직(client)의 책임</p> <p>인증기관은 현장 심사의 종결 회의로부터 최대 20일(calendar days) 이내에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조직(client)에게 요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실행된 시정; b) 사용된 방법론, 분석 및 결과를 포함하는 근본 원인; <p>인증기관은 조직(client)에게 현장심사의 종료 회의로부터 최대 60일(calendar days) 이내에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다른 유사 프로세스 및 제품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각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해 실행된 시스템적 시정조치; d) 실행된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증. <p>5.11.2 경 부적합에 대한 조직(client)의 책임</p> <p>인증기관은 현장 심사의 종결 회의로부터 최대 60일(calendar days) 이내에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조직(client)에게 요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실행된 시정; b) 사용된 방법론, 분석, 및 결과를 포함하는 근본원인;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c) 다른 유사 프로세스 및 제품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각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해 실행된 시스템적 시정조치;</p> <p>d) 실행된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증.</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i>IATF CARA(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및 IATF CARA 부적합 관리 도구를 통합하도록 업데이트 되었다. CARA의 실행에 따라 규칙 5.11.1 및 5.11.2는 변경되지 않는다.</i></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t; font-weight: bold;">14</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인증기관 책임 5.11.3</p>	<p>인증기관은 조직(client)이 제공한 IATF CARA 부적합 양식에 제출된 정보를 검토해야 하고 현장심사의 종료 회의로부터 최대 90일(calendar days) 이내에 수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사 결정해야 한다.</p> <p>수용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특별심사가 수행되지 않는 한(5.11.4항 및 7.2항 참조), 부적합은 수용 가능하고 종결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인증기관은 다음 심사에서 파악된 시정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검증하여야 한다 (5.2항 및 5.11.5항 참조).</p> <p>수용 가능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인증기관은 심사의 종료 회의로부터 최대 90일(calendar days) 이내에 조직(client)과 함께 미해결의 문제(issue)를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해결책이 완료될 수 없다면, 부적합은 불합격(수용불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실패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IATF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인증결정은 부정적이어야 하고 (5.12항 a-d 참조) 조직(client)은 최초 인증심사 (1단계 준비성 검토 및 2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 유효한 인증서는 즉시 철회(withdrawal)되어야 한다.</p> <p>시정조치의 실행이 현장심사의 종료 회의로부터 최대 90일(calendar days) 이내에 완료될 수 없는 예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부적합이 미해결됨 수용된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100%해결된 것으로 고려한다:</p> <p>a) 조직(client)의 프로세스에 미치는 시스템 영향의 검토를 포함하여, 고객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상황의 봉쇄조치가 취해짐;</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b) 조직(client)의 프로세스에 미치는 시스템 영향의 검토를 포함하여, 부적합 상황의 제거를 실증하기 위해 수용 가능한 조치계획, 지침서, 기록과 같은 문서화된 증거;</p> <p>c) 수용 가능한 조치 계획에 근거하고 다음 심사 이전에 일정 계획된 현장 특별 심사(7.2항 참조);</p> <p>d) 100%해결된 것으로 결정된 상황에서는, 인증기관은 정당화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다음 심사에서 파악된 시정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검증하여야 한다(5.2항 참조).</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i>IATF CARA (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및 IATF CARA 부적합 관리 도구의 출시에 맞춰 업데이트 되었다. CARA 용어는 현재 미결상태(open)이지만 100 % 해결된 것이 아닌, "수용 가능하지만 100 % 해결됨" 이므로 100 % 해결됨 용어를 업데이트 한다.</i></p>
15	<p>중 부적합의 현장 검증 5.11.4</p> <p>및</p> <p>경 부적합의 현장 검증 5.11.5</p>	<p>5.11.4 중 부적합의 현장 검증</p> <p>중 부적합의 경우, 인증기관은 시정조치의 검증을 위한 현장 특별 심사(7.2항 참조)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 심사의 종료 회의로부터 최대 90일(calendar days) 이내에 특별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p> <p>중 부적합에 대해 수용된 시정조치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사 결과는 실패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IATF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인증서는 철회(withdrawal)된다 (8.4항 참조).</p> <p>인증기관은 시정조치의 검증이 완료된 후에 조직(client)에게 보충 특별 심사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각 부적합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을 포함하여야 한다.</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5.11.5 경 부적합의 현장 검증</p> <p>현장심사의 종료 회의로부터 최대 90일(calendar days) 이내 경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현장검증은 지식 및 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인증기관의 재량이다.</p> <p>경 부적합에 대해 수용된 시정조치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중 부적합이 시정조치 프로세스 (IATF 10.2항 참조)에 대하여, 그리고 이전 경부적합은 중 부적합으로 재발행 되어야 한다.</p> <p>인증기관은 시정조치의 검증이 완료된 후에 조직(client)에게 보충 특별 심사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각 부적합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을 포함하여야 한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i>IATF CARA (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및 IATF CARA 부적합 관리 도구의 출시에 맞춰 업데이트 되었다.</i></p>
<p>16</p>	<p>심사일수 결정 5.2</p>	<p>인증기관은 최소 심사일수를 결정하는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하고, 각각의 조직(client)에 대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조직(client)의 경영시스템 심사를 계획하고 완수하는데 필요한 일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인증기관은 최초 2 단계 심사와 각각의 사후심사를 위한 심사일수를 결정하기 위해 표 5.2 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5.2 는 갱신인증 심사에 대한 최소 심사일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에 의해 각 결정된 총 심사일수와 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각 심사에 대해 기록되어야 한다.</p> <p>심사일수를 결정함에 있어, 인증기관은 무엇보다도 다음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 f) g) 전체 심사일수 중, 최대 10%-15%는 심사 보고서 작성에 할당될 수 있다; h) ... q).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IATF CARA (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및 IATF CARA 부적합 관리 도구 사용에 맞춰 업데이트 되었다. 규칙 5.2 a) – f), h) – q) 및 표 5.2는 변경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17</p>	<p style="text-align: center;">인증 기록 9.1</p>	<p>인증기관은 모든 조직이 신청을 제출하고 모든 조직(client)이 심사 받고, 인증 받고, 또는 인증의 정지 또는 철회(withdrawal) 또는 취소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조직(client)에 대한 심사 및 기타 인증 활동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인증기관은 다음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견적, 심사일수 및 심사비용을 포함한 신청 정보; b) IATF 16949의 모든 요구사항이 조직(client)의 프로세스에 의해 다루어졌다는 증거를 포함한, 최초, 사후관리, 갱신 및 전환 및 특별 심사 보고서; c) 또 다른 인증기관에 의해 심사된 원격 지원 장소에 대해서는, 심사 계획, 심사 보고서, 모든 발견사항, 모든 시정조치 및 다른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된 모든 검증 조치사항; d) ... q).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IATF CARA (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도구 출시에 맞춰 업데이트 되었다.</p>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19	부속서 1.2	<p>부속서 1.2 – 모든 교대조에 대한 제조 심사의 검증을 위한 표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786 331 2011 592"> <thead> <tr> <th rowspan="2">제조 프로세스 명</th> <th rowspan="2">운영 교대조</th> <th colspan="5">심사 주기</th> </tr> <tr> <th>최초 / 갱신</th> <th>첫 번째 사후관리 심사</th> <th>두 번째 사후관리 심사</th> <th>세 번째 사후관리 심사</th> <th>네 번째 사후관리 심사</th> <th>다섯 번째 사후관리 심사</th> </tr> </thead> <tbody> <tr> <td>스탬핑</td> <td>1,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용접</td> <td>1,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열처리</td> <td>1,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장</td> <td>1,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조립</td> <td>1,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이 예시에 대해, 교대조 시간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교대조 (6.00 a.m. – 2.00 p.m.) • 2 교대조 (2.00 p.m. – 10.00 p.m.) • 3 교대조 (10.00 p.m. – 6.00 a.m.) <p>비고 1: 인증기관은 3년 심사주기의 각 심사에서 각 제조 프로세스에 대하여 어떤 교대조가 심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p> <p>비고 2: 부속서 1.2 표의 동등한 버전이 IATF CARA(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도구에 내장되어 있으며, CARA에서 완성되도록 요구된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부속서 1.2 표의 동등한 버전이 새로운 IATF CARA(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도구에 내장(포함)되어 있다.</p>	제조 프로세스 명	운영 교대조	심사 주기					최초 / 갱신	첫 번째 사후관리 심사	두 번째 사후관리 심사	세 번째 사후관리 심사	네 번째 사후관리 심사	다섯 번째 사후관리 심사	스탬핑	1,2,3							용접	1,2,3							열처리	1,2,3							도장	1,2,3							조립	1,2,3						
제조 프로세스 명	운영 교대조	심사 주기																																																					
		최초 / 갱신	첫 번째 사후관리 심사	두 번째 사후관리 심사	세 번째 사후관리 심사	네 번째 사후관리 심사	다섯 번째 사후관리 심사																																																
스탬핑	1,2,3																																																						
용접	1,2,3																																																						
열처리	1,2,3																																																						
도장	1,2,3																																																						
조립	1,2,3																																																						
20	적합성 증서 결정 5.14.1	<p>인증기관은 다음 사항 이후에 적합성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client)은 12개월간의 내부심사 및 성과 데이터는 아니지만 내부 및 외부 성과 데이터와 전 과정의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포함하는, 1 단계 준비성 검토(6.5 항 참조)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번호	규칙 인용	공인 해석
		<p>b) 관련 현장이 IATF CARA(Common Audit Report Application) 도구를 사용하여 미 해결된 부적합사항 없이 최초 심사(1 단계 준비성 검토 및 2 단계)를 완료한 경우; 그리고</p> <p>c) 거부권자에 의한 승인 (4.1 항 참조).</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i>IATF CARA(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도구의 출시에 맞춰 업데이트 되었다.</i></p>
<p>21</p>	<p>용어 및 정의 10.0</p>	<p>10.0 용어 및 정의</p> <p>긍정적인 측면(Positive aspect)</p> <p>긍정적인 측면은 IATF 16949 심사를 수행하는 동안 인증기관 심사원이 고객 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관찰된 강점/우수 사례이다.</p> <p>변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 <i>긍정적인 측면을 기록하도록 허용하는 IATF CARA (Common CB Audit Report Application) 도구의 출시에 맞춰 새로운 정의를 만들었다.</i></p>